

수원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나965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0. 27.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1. 18. 선고 2019가단715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2017. 5.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쪽 제5행의 ‘피고가’를 ‘D이’로, 제4쪽 제2행의 ‘H의’를 ‘D의’로 각 고치고, 제1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2019. 7. 3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820,473,000원에 달하나,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등기부상 채권자를 F조합(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통틀어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고,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이하 ‘선행 압류등기’라 한다)가 되어 있었다. 』

나.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가, 나, 다’항을 ‘나, 다, 라’항으로 바꾸고, 아래 내용을 제2의 가.항으로 삼는다.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9. 10.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는바, 원고는 위 무렵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선행 압류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원고의 채권 총액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무렵 채무자 D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난 2019.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6. 3. 22. 청구금액을 190,000,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단384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이하 '제1차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2017. 5. 23. 위 법원 2017카단224호로 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2017. 5. 24. 제1차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 원고가 위 가압류취소결정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라527호로 항고하여 2018. 9. 4. 청구금액 91,565,620원에 관한 가압류 인가결정을 받았고, 2018. 9. 10. 위 가압류 인가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이하 '제2차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가압류등기는 가압류재판을 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마쳐지는 것이어서(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항), 제2차 가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를 열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설령 원고가 제2차 가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 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오히려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일인 2019. 7. 15. 이후에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합계 15억 원

및 선행 압류등기의 채권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에 2019. 8. 13. 채무자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카명382호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2019. 11. 12. 재산명시기일이 열렸으며 원고가 2019. 11. 15. 위 재산명시 사건기록을 열람 및 복사신청하여 채무자 D이 수정 · 제출한 재산목록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채무자 D의 유일한 재산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엄기창, 판사 이지형, 판사 최호열